



금 융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 행정지도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연체사실 통보시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5.1.12~2.1)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1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과적인 신용관리 도모
- [지도내용] 불임 참조
- [유효기간] '16.2.5부터 '17.2.4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최상아 사무관
- [관련법령] 해당 없음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 금융행정지도 원칙(「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 행정지도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대부업협회장, 3,028개 금융회사

행정사무관

최상아

신용정보팀장

남동우

서민금융과장

전결 2016. 2. 4.

김기한

협조자

시행 서민금융과-152

(2016. 2. 4.)

접수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번호 02-2156-9670

팩스번호 02-2156

/ choisa@korea.kr

/ 대국민 공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연체사실 통보관행 개선

1 행정지도의 취지

- ☐ 소비자가 연체 발생 시 연체정보 등록시점과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 전 사전 통보시 등록시점과 불이익을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는 효과적으로 신용을 관리할 수 있음

2 행정지도의 내용

- ☐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의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에게 등록 전 사전 통보시,
 - (내용) 통보 내용에는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되는 시점(구체적인 날짜) 및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승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예시) 00월 0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였습니다. 00월 0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소비자에게 상기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문자, 전화, 이메일, 서면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함

3 행정지도 유효기간

- ☐ 행정지도 유효기간 : '16.2.5부터 '17.2.4까지(1년)

※ 시스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6.4.1일부터 시행 가능